

의안번호	2125741
의 퇴 인	진성준의원
회 답 일	2024. 1. 18.
추 계 번호	23B4907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의 시행,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 및 보급하며, 시·도지사가 근로조사관 채용 및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5억 4,900만원, 2029년 36억 9,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80억 4,100만원(연평균 36억 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국비							
기본계획 수립(안 6조)	40	—	—	—	—	—	—
실태조사(안 8조)	20	20	20	20	20	—	—
공정거래 지침 등(안 12조)	55	55	55	55	55	—	—
지방비							
근로조사관(안 14조)	3,326	3,369	3,416	3,465	3,514	—	—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안 16조)	107	107	107	107	107	—	—
추가재정소요	3,549	3,551	3,599	3,647	3,696	18,041	3,608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동 추가재정소요는 국비 및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임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근로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5	안 제9조(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제6조의 기본계획과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3. 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업 4.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단체나 지방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의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10조(교육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1조(법률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2조(공정 거래 지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음(제1항)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13조(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시·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4조(근로조사관)	시·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음(제1항)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함(제2항)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5조(협력 체계 구축)	시·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6조(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시·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수립(제1항)
3	안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8조(실태조사)	○	실태조사 시행(제1항)
5	안 제9조(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제1항) 위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이 예상되나, 현실점에서는 향후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 계획 및 내용을 예상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제3항)
5	안 제10조(교육 지원)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제1항)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제3항)
6	안 제11조(법률 지원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세무상담, 노무상담, 법률 서비스 지원의 구체적 계획 및 내용을 예상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7	안 제12조(공정거래 지침 등)	○	• 공정거래 지침(제1항)
8	안 제13조(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시·도지사가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조직의 규모, 직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0	안 제14조(근로조사관)	○	• 근로조사관 고용(제1항)
11	안 제15조(협력체계 구축)	—	• 미대상 — 시·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12	안 제16조(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	•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제1항)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기관부담금 효율,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5년 주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 (유사사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예산) 4,000만원(2021년)
 - (법적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²⁾
 - (주요내용)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 수립을 목적으로 기업 및 근로자의 근로복지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
 - (수행기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추계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 단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000만원으로 추계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기관부담금 효율
(2023년 11월 기준,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7	1.3	1.3	1.3	1.3	1.3	1.3
공무원 기관부담금 효율	12.999	13.004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소비자물가상승률	3.4	2.4	2.2	2.2	2.1	2.1	2.1

- 2)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표 2]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기본계획 수립	40	—	—	—	—	4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실태조사(안 제8조)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 (유사사례) 임금실태 등 조사

- (용역예산) 2,000만원(2022년)
- (법적근거) 「최저임금법」 제23조³⁾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 (주요내용)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등의 자료를 가공·분석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을 조사
- (수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추계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억원으로 추계됨

[표 3]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실태조사	20	20	20	20	20	100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공정거래 지침 등(안 제12조)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의 보호,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정거래 지침의 정기적인 개정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연구용역 금액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공정거래 지침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 (유사사례) 고용상 연령차별 차별판단지침 등 업무 매뉴얼 제작(고용노동부), 통합적 돌봄 욕구 기반 서비스 제공지침서 개발(보건복지부)
 - 공정거래 지침의 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지침의 제작 및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의 사례(5,500만원/회)를 토대로 산출

[표 4] 지침의 제정 및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고용상 연령차별 차별판단지침 등 업무 매뉴얼 제작	고용노동부	2020	40
통합적 돌봄 욕구 기반 서비스 제공지침서 개발	보건복지부	2023	70
평균			55

자료: 나라장터

- 추계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의 보호,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억 7,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공정거래 지침의 제정 및 보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공정거래 지침 등	55	55	55	55	55	275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근로조사관(안 제14조)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조사관을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제정안은 근로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본 추계서에서의 근로조사관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의 7급 공무원 인건비를 토대로 산출
 - (1인당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1인당 인건비는 2022년 기준 고용노동부 7급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 인원수로 나눈 평균금액(3,308만 1,000원⁴⁾)을 토대로 산출⁵⁾
 - 추계기간 동안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및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 (고용인원) 제정안의 취지를 준용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5명씩 채용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광역자치단체 수)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4) 자료: 고용노동부

5)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표 6] 근로조사관 고용에 따른 인건비: 2025~2029년

(단위: 만원, 명, 개)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1인당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1인당 인건비(A)	3,455	3,501	3,547	3,595	3,643	—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 요율(B, %)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
	기관부담액(C=A×B)	453	462	472	482	492	—
	추가재정소요 (D=A+C)	3,908	3,963	4,019	4,076	4,134	20,101
시도당 고용인원(E)		5	5	5	5	5	—
광역자치단체 수(F)		17	17	17	17	17	—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G=D×E×F, 백만원)		3,322	3,369	3,416	3,465	3,514	17,086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초과근무수당 등을 고려할 경우 인건비는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자산취득비) PC·사무집기 등 1인당 자산취득비는 2025년 기준 489.3만원으로 2025년에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
 - 2020년 기준 정부기관 직원 1인당 자산취득비 419.7만원⁶⁾에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7] 근로조사관 고용에 따른 자산취득비: 2025~2029년

(단위: 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자산취득비	493.3	—	—	—	—	493.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시·도지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사관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71억원으로 추계됨

[표 8] 근로조사관 고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근로조사관	3,326	3,369	3,416	3,465	3,514	17,091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20. 6.

마.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안 제16조)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할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

- 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고용노동부 내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구성) 2023년 12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는 총 15개가 있으며, 제정안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설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5개 위원회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위원회(사전지정운용제도 심의위원회⁷⁾)의 구성을 토대로 산출
 - － 사전지정운용제도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참고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2명,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단가)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⁸⁾
 - － 이때, 추계기간 동안 회의참석 사례금 지급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횟수) 사전지정운용제도심의위원회가 연 3회 개최되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도 연 3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 위원회를 연 3회 개최하는 경우 운영비용은 매년 1,200만원(10명×4회×30만원)으로 추계됨
- (광역자치단체 수)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시·도지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2023.12.

8)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214쪽)

[표 9]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 비용추계: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7	7	7	7	7	—
회의개최 횟수(B, 회)	3	3	3	3	3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광역자치단체 수(D)	17	17	17	17	17	—
소계(E=A×B×C×D, 백만원)	107	107	107	107	107	536

주: 1.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시행,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 및 보급하며, 시·도지사가 근로조사관 채용 및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5억 4,900만원, 2029년 36억 9,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80억 4,100만원(연평균 36억 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0]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국비							
기본계획 수립(안 6조)	40	—	—	—	—	—	—
실태조사(안 8조)	20	20	20	20	20	—	—
공정거래 지침 등(안 12조)	55	55	55	55	55	—	—
지방비							
근로조사관(안 14조)	3,326	3,369	3,416	3,465	3,514	—	—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안 16조)	107	107	107	107	107	—	—
추가재정소요	3,549	3,551	3,599	3,647	3,696	18,041	3,608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동 추가재정소요는 국비 및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임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 동 추가재정소요는 국비 및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사업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현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